#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271

발의연월일: 2021. 11. 11.

발 의 자:김회재·강준현·문진석

민형배 · 서동용 · 소병훈

송재호 • 이수진(비) • 이용우

장경태ㆍ허 영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 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 고 있음.

이에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이나 공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후단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해당하는 법인"을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공공시행자 또는 제1항제11호(공공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11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자"를 각각 "공공시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공공시행자 외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0분의 10으로 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및 총사업비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 제11조(시행자 등) ① ---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 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 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 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 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후단 신설> 해당하는 법인. 이 경우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 자"라 한다)가 출자에 참여하 여 설립한 법인의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 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 ②・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있으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및 총사업비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1-11-11-00-0-0-01	_
<u>다.</u>	
②・③ (현행과 같음)	
<b>4</b>	_
	_
	_
	1
호(공공시행자	_
	_
	_
	_
	_
	_
	_
	_
	_
	_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 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 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 함할 수 있다.

- ⑤ (생략)
-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 호부터 제1호까지(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 ⑩ (생 략)
- 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

⑤ (현행과 같음)
6
<u>공공시행자</u>
<u>.</u>
⑦ ~ ⑩ (현행과 같음)
① <u>공공시행자</u>

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생략)

<신 설>

2. ~ 8. (생략)

② • ③ (생 략)

						_	
							•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

-----

-----

1. (현행과 같음)

1의2.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자를 위 한 사업 및 지역의 공공사업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